

“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과 사회를 이음”

제2회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문

‘사단법인 나눔과이음’과 ‘다다다협동조합’은 학교 밖에서 창업 및 예술을 통해 다양한 삶을 도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. 2024년 새해, 여러분의 사업과 창작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‘공익활동’을 프로젝트로 제안해주세요.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매출·이력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.01.02.

다다다협동조합

『제2회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』

- 접수기간 : 2024년 01월 21일 일요일, 24:00 까지
- 신청방법 : www.ddd.or.kr/eum 온라인 접수

1. 사업개요

□ **사업명** : 제2회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

□ **주최 및 주관** : 사단법인 나눔과이음, 다다다협동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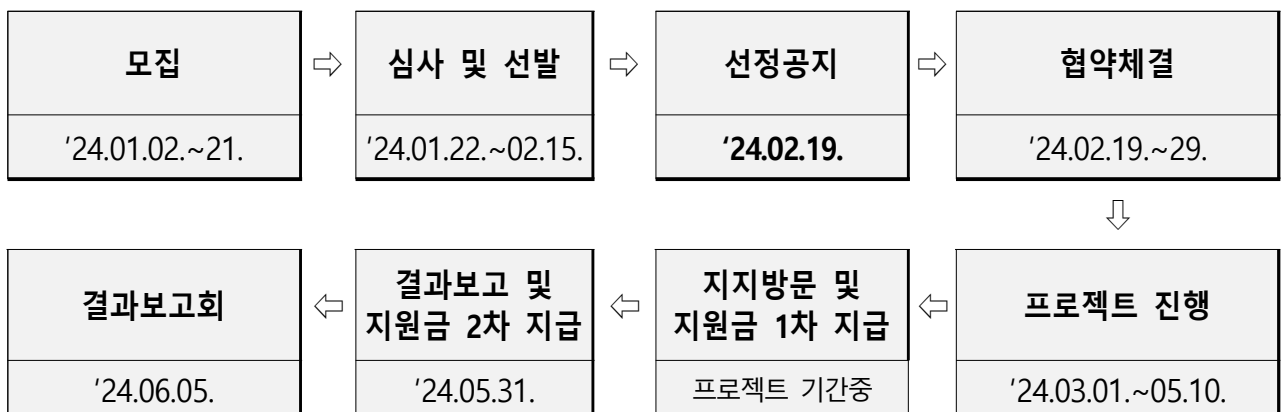
□ **사업 목적**

-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삶을 도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발굴 및 네트워킹
-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들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의 매출 및 경력 지원
- 공익단체 활동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

□ **사업 내용**

- 2024년 상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프로젝트(공익단체 활동지원, 취약계층 지원활동) 지원 진행
- 선정된 공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및 <지지방문> 진행
- 프로젝트 결과와 후기를 함께 공유하는 <사업결과보고회>를 통한 네트워킹 진행

□ **사업 운영 일정**



2. 모집 개요 및 신청방법

- 모집 대상 :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중 창업가 및 예술가
- 지원 내용 : 공익 프로젝트 지원금(프로젝트별 50~200만원) 및 협업 지원
- 모집 규모 : 4명(팀) 이상
- 모집기간 : 2024.01.02.(화) ~ 2024.01.21.(일), 24:00까지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www.ddd.or.kr/eum)
- 신청 페이지(구글설문 양식) 접속 → 사전설문 작성 → 신청서 작성 → 신청완료
- 지원자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,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보완기간이 약2주 정도 주어집니다.

□ (서류심사 합격자) 제출서류

- 지원자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단계에서는 [사전설문]으로 대상여부만 확인하며,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 서류 제출 진행을 안내 드립니다.

증빙 항목	제출 서류
사업정보 및 대표자 확인	사업자등록증 사본
예술 활동 여부 확인	예술 관련 주요 활동이력 또는 포트폴리오 (자유양식)
대표자 확인	신분증(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여권 등) 사본
학교 밖 청소년, 비진학 청년 확인	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

3.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지원 분야

-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공익프로젝트(공익단체 활동지원, 취약계층 지원활동)를 지원

<p>① 공익단체 활동지원</p>	<p>인권보장,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민·사회·인권·지역 단체·기관들의 활동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(청소년쉼터, 자립지원관, 사회복지관 등)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하며,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심사 시 우대함. -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,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((예비)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마을기업)인 경우 기관의 공익활동 현황과 프로젝트 내용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심사 진행. (신청 전 다다다협동조합과 사전 협의 권장) - 종교단체, 특정 정당 지지모임, 단순 취미 동아리 성격의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<p>② 취약계층 지원활동</p>	<p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등 법률, 행정규칙, 자치규칙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명시된 사회적취약계층(첨부1 참고) 외에도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'주거취약계층',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조례」에 따른 '소수자'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 발굴 및 제안 가능하며 취약상황 및 지원의 긴급성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인정함. - 예시: 가정 밖 청소년, 청소년쉼터 이용자, 보호종료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노숙인, 학교 밖 청소년, 학교폭력 피해자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난민, 장애인, 저소득층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취업취약계층, 최저주거기준미달거주자 등

□ 신청자격

-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)

<p>①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학교 밖 청소년'의 기준: 공고일 현재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,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, 자퇴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- '비진학 청년'의 기준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,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, 자퇴하여 공고일 현재 최종 학력이 초/중/고등학교 졸업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
<p>② 창업가 또는 예술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가의 기준: 공고일 현재 △창업(개업)을 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△창업(개업) 준비가 완료되어 본 지원사업 종료일 이전에(2024년 5월달까지) 사업자등록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예비창업자 개인 및 팀 - 예술가의 기준: 문학,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, 다원, 조형, 시각(사진, 영상 등 미디어 포함) 등 모든 영역에서 창작 및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개인 및 팀 (등단, 수상, 데뷔, 전시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준비활동, 창작발표 활동을 온/오프라인에서 해오고 있는 경우 폭넓게 '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'로 인정)
<p>③ 수도권 지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지원사업의 주요일정(대면심사, 지지방문, 결과발표회 등)이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장(연습실, 작업실) 또는 프로젝트 진행 장소가 수도권 지역(서울, 경기, 인천)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진행

4. 지원내용

□ 프로젝트 지원금 : 프로젝트별 50~200만 원

-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(또는 평균적인 시장 가격)에 프로젝트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 및 지원 (부가세 및 원천세 포함)
- 시중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, 재료비(실비)를 프로젝트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 및 지원

산출 근거 예시	
(이용자 X 제품·서비스의 실제 판매가격) + 실비	(200명 X 메뉴가격 9,000원)+현수막 5만원=185만 원
(프로젝트 기간 및 횟수 X 인건비) + 실비	(강의 3회 X 25만원)+실비(차비 등) 10만 원 = 85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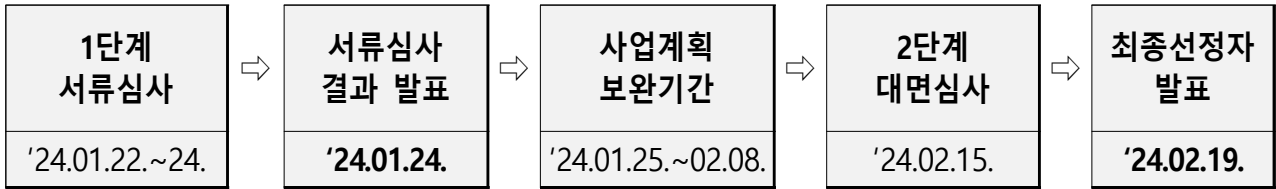
- 학교 밖 청소년·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의 매출 및 경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, 지원자의 적절한 이윤 및 인건비가 보장되는 지원금 산정을 권장합니다.
- 지원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청 및 집행 하며,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, 활동 결과보고로 통합합니다.

□ 프로젝트 협업 : 지지방문, 자원봉사자 연계, 홍보협조, 법률자문 등

- 프로젝트 기간 동안 1회의 지지방문 진행
- 사전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협업 진행
- (예시) 자원봉사자 연계 : 도시락 등을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배달을 도울 자원봉사자 2~3인을 모집하여 지원

5.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□ 선정 절차 : 총 2단계 심사(서류→대면)를 통해 최종선정



- 지원자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(1차)사업계획서는 간소화 하여 제출이 가능하며, 서류심사 합격자들에게는 대면심사 전에 파트너 공익단체 발굴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[사업계획 보완기간]이 약2주 정도 주어집니다.
- 서류심사 결과는 지원자 분들에게 개별 안내 되며, 최종선정 결과는 다다다협동조합 홈페이지로 공고 드립니다.

□ 심사 방법

- **서류심사** : 온라인 신청서 및 가점항목을 토대로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
 - 서류심사 합격자는 최종 선정인원의 1.5배수 내외로 선정
- **대면심사** : 자기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, 질의응답을 토대로 최종 지원자 선정 (팀당 15분 내외 예상)
 - 지원자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발표용 PPT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- 대면심사는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라 할지라도 프로젝트 내용, 추진 의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. 발표 기법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며, 맛있는 음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
 - 대면심사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심사위원 3인이 참여 예정.

□ 평가지표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사업계획의 적절성	△ 지원자의 사업 및 예술 역량을 활용한 프로젝트인가 △ 기대하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활용계획이 있는가 △ 프로젝트 대상의 수요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△ 지원금 산출 근거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	35
사업계획의	△ 프로젝트와 관련된 준비활동이 있었는가	25

실현 가능성	△ 프로젝트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△ 실현가능한 사업 내용, 일정,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△ 프로젝트 대상 연계 및 발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	
사회적 가치 창출	△ 지원사업 목적을 이해한 공익활동 프로젝트인가 △ 프로젝트 대상은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대상인가 △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 및 대상을 발굴하였는가	40

□ **가점항목** (선택사항)

- 사회적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([참고1]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자에 한함)
- 세부기준 예외에 관한 안내: 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"시설 거주기간" 등 세부 기준에 일부 충족 되지 않더라도 취약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신청 가능합니다.

6. 참고 및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선정은 무효처리 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·소수자와 함께 합니다. 프로젝트 홍보 및 진행 과정에서 차별적이거나, 인권침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최 측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차별적이거나,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의무를 가지며,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를 시정 할 의무를 가집니다.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협약이 해지되며, 지원이 중지됩니다.
- 최종 선정자는 안내 된 일정에 참석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. 연락불능, 불참, 협조거부의 경우 지원사업 협약이 해지되며, 지원이 중지됩니다.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불이익은 주최 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↖ 다양한 문의를 환영합니다! 다다다협동조합 (hello@ddd.or.kr / 02-2677-0625) ↗

[참고1]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과 서류

	대상자	증빙 가능한 서류
1	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	수급자증명서 등
2	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	주민등록증 등
3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	장애인증명서 등
4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	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확인서 등
5	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'청년'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'경력단절여성등'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	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
6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7	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	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확인서 등
8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9	「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	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
10	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확인서 등
11-1	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	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결정통지서 등
11-2	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	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결정통지서 등
12-1	1년 이상 장기 실업자	워크넷 구직기록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
12-2	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	교정시설 수용증명서

	니한 자(단, 노역유치자는 제외)	
12-3	「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 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소년원 수용증명서
12-4	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(보호관찰기간 중인 자)	보호관찰기관 증명서
12-5	노숙인	노숙인쉼터 확인서 등
12-6	약물·알코올·도박중독자	중독 관계기관 확인서 등
12-7	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(질병관리본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)	관계기관 사실확인서
12-8	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	가족관계등록부, 부양중인 가족 관련 서류(수용증명서 등)
12-9	난민 (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)	난민인정증명서 등
12-10	보호종료아동	보호종료확인서
12-11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·퇴소한 자	청소년쉼터 입소확인서
13-1	조손가정	관련기관(사회복지관 등) 확인서
13-2	외국인근로자	근로계약서, 여권 등
13-3	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(신용등급 7~10등급)	신용등급조회서류
13-4	학교폭력 피해자	관련기관(경찰, 학교, 상담소 등) 확인서
13-5	가정 밖 청소년	지원기관(쉼터, 자립지원관 등) 확인서
13-6	학교 밖 청소년	지원기관(꿈드림, 상담소 등) 확인서
13-7	중증질환자	관련기관 확인서 또는 진단서

- **가점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 해야 합니다 (제출시기: 서류심사 합격 이후)**
- 세부기준 예외에 관한 안내: 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“시설 거주기간” 등 세부 기준에 일부 충족 되지 않더라도 취약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신청 가능 (예시: ‘청소년 쉼터에 입·퇴소한 자’의 경우 입소기간 1년 이상이 세부 기준이나, 1년 미만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시 가점 신청 가능)

[참고2] 온라인신청서 작성 항목 안내

- 지원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(구글 설문)으로 지원을 받습니다.
- 계획하고 고민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으시되, 최대 글자 수에 맞추느라 분량을 무리하게 늘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최대 글자 수는 불필요하게 길게 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안내입니다.
-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아닌거 같아서 고민이신가요?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. 서류 심사 합격자 분들에게는 대면심사 전에 파트너 공익단체 발굴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[사업 계획 보완기간]이 약2주 정도 주어집니다.
- 온라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섹션(장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지원자 정보	
성명	법인, 단체일 경우 법인명(단체명)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어주세요
생년월일	법인,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
핸드폰번호	
이메일주소	
웹사이트	
신청자격 유형(1)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밖 청소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진학 청년
신청자격 유형(2)	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 창업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술가
활동지역 (1)	예시: @@시 @@구
활동지역 (2)	위의 활동 지역이 어디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신 지역인지 선택해주세요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장, 작업장, 연습실 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젝트 추진 지역
자유로운 자기소개	문장형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요이력을 적어주셔도 됩니다. 예비창업가 및 예술가의 준비활동, 창작활동을 심사과정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. (공백 포함 최대 500자 미만) *(선택) 기존에 사용하시던 소개 팸플릿 또는 포트폴리오 파일이 있을 경우 메일 (hello@ddd.or.kr) 로 제출 해주셔도 됩니다.
(선택) 사회적취약계층 가점 신청	공고문 참고1 참조
공익프로젝트 정보	
프로젝트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단체 활동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지원활동

<p>지원 대상(프로젝트 이용자) 제안</p>	<p>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- 단체: 모집 및 발굴하고자 하는 단체의 성격,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단체명 - 취약계층: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. (예시: <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>에 따른 고시원 거주자 중 보다 취약한 탈가정 청소년)</p>
<p>대상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</p>	<p>지원자분이 제안한 지원 대상이 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나, 발굴에 참고가 된 기사 등의 자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</p>
<p>프로젝트명</p>	
<p>프로젝트 세부내용</p>	<p>주요내용: △프로젝트 진행 기간 △프로젝트 실행 내용 △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방법 △프로젝트 파트너 및 협력기관 (공백 포함 500자 미만)</p>
<p>현재 프로젝트 진행 단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아이디어 구상 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프로젝트 준비 돌입 (관련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회의 진행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프로젝트 준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프로젝트 진행 중 <input type="checkbox"/>기타 ()</p>
<p>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?</p>	<p>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</p>
<p>프로젝트와 관련한 교육 및 활동 경험</p>	<p>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</p>
<p>프로젝트 예상 수요인원</p>	<p>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(명) 또는 단체(개)를 숫자로 적어주세요. 1개 단체 및 소수를 지원한다 해도 지원 내용 및 효과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</p>
<p>희망 지원금</p>	<p>50~200만 원 사이 (부가세 및 원천세 포함)</p>
<p>지원금 산출근거</p>	<p>예시: (이용자 (명) X 제품, 서비스의 실제 판매가격 (원)) + 실비 (원) = 신청금액</p>
<p>프로젝트 목표</p>	<p>지원자분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(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)</p>
<p>프로젝트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</p>	<p>예상되는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다다협동조합, 나눔과이음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 심사 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안 드리거나, 자문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.</p>